

의안번호	2215925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1.30.
추 계 번 호	26E009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52억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762억원(연평균 15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7~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6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93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제106조제1항)	-152	-152	-152	-152	-152	-762	-152
- 국세(74.7%)	-114	-114	-114	-114	-114	-569	-114
- 지방소비세(25.3%)	-39	-39	-39	-39	-39	-193	-3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제1항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- (신설)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6조제1항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, 추계기간을 2027~2031년까지로 설정
-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~2024년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·부과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·부과 실적은 최근 수준(2024년)을 유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2022~2024년 사회적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·부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자료는 명칭에 ‘사회적협동조합’이 포함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·부과 실적 자료임
 - －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명칭에 ‘사회적협동조합’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,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관·단체의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¹⁾

1)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조(명칭)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,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,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,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.

[표 2] 사회적협동조합 부가가치세 신고·부과 실적

(단위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회적협동조합 개수	매출세액(A)	매입세액(B)	납부세액(A-B)
2022	4,787	32,868	26,636	6,232
2023	5,137	37,293	22,826	14,467
2024	5,458	38,852	23,614	15,238

주: 1.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 중 명칭에 '사회적협동조합'이 포함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임

2.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작성된 금액으로, 실제 납부·징수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52억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762억원(연평균 15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7~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6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93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사회적협동조합 공급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52	-152	-152	-152	-152	-762	-152
- 국세(74.7%)	-114	-114	-114	-114	-114	-569	-114
- 지방소비세(25.3%)	-39	-39	-39	-39	-39	-193	-3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